의 안 1259 번 호

[울신광역시 중구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· 운영에

관하 조례안

토 보고

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6. 9. 12.(월)

나. 제 출 자 : 강혜순 의원 외 10명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6. 9. 13.(화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6. 9. 23.(금)

2. 제안이유

○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 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제정 목적(안 제1조)
-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대상(안 제3조, 제4조)
-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,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(안 제5조, 제6조)
- 안내표지, 주차요금 감경, 위반자동차 조치(안 제7조 ~ 제9조)

4. 관련법령
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- 「모자보건법」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제 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 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 하는 것으로
- 사전에 전문가 입법자문, 관련부서(보건소) 의견 조회, 입법 예고 실시(8. 30.~9. 5.) 등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 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〈관계법령〉

□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 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 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장애인등"이라 함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.
- 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「모자보건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모성(母性) 및 영유아(영유아)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임산부"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
제8조(임산부의 신고 등) 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의료법」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"의료기관"이라 한다)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